

# 실비보상 규정

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실비보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당 등)** 본회의 임원 및 소속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본회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본회의 요청에 의하여 본회의 사업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2. 체육관련 교육 등을 위한 전문교육 등에 초청된 강사
3. 기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본회의 시책사업 참여자

**제4조(여비)** 본회의 임원 등이 본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당에 여비를 포함하여 예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본회의 임원 :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2. 외부전문가 : 사무국장에 상당하는 여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실비보상기준

구 분	지 급 액
1. 체육회발전연구·지도·상담 사업 참여 2. 기타 본회의 운영목적사업 참여	1회 70,000원 ※ 2시간 초과 시 30,000원 추가지급

[별표2] (개정 2021, 12. 21.)

##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 (만원)	
	일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 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시간보상수당 30)	30(20*)
특 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시간보상수당 20)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 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 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시간보상수당 12)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3 (시간보상수당 8)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 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 의 경력자		8 (시간보상수당 5)	5 (시간보상수당 4)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7 (시간보상수당 4)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 강의시간 산출기준 : 1시간 이하 = 1시간 /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2시간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시간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시간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 지급  
⇒ 100인 ~ 250인 미만 = 20% 할증 / 250인 이상 = 30% 할증
- 원고료 지급기준 \*원고규격 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참고  
⇒ A4 1매 (과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 13,000원 / 최대 A4 6매분까지 지급

[비 고]

남양주시청 강사료 지급기준 준용